

의안번호	2201506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4. 7. 24.
추계번호	24C176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의 범위에 ①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위기상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확대에 의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음

-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
-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신규 위기상황

개정안에 따른 신규 위기상황	참 고(현행 위기상황)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자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6)과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3,585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그 외 20%)
 - 다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¹⁾의 소득 기준과 재산 및 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대상 가구 수와 지원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현 시점에서는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나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사람 중 현행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1) 1인가구 1,458,609원, 2인가구 2,445,064원, 3인가구 3,146,026원, 4인가구 3,840,810원 이하

- 또한, 현 시점에서는 신규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원 수와 지원할 항목을 알 수 없으므로 지원 단가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 현행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는 대상 가구의 가구원 수 및 적용되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단가와 지원 횟수가 달라짐

[표 2] 긴급복지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및 단가: 2024년 기준

지원항목	내용	단가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정액 지급, 최대 6회 지원	(월 지원 단가, 단위: 원)			
		1인	2인	3인	
		713,300	1,178,400	1,508,600	
		4인	5인	6인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최대 2회 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비용 차등 지급, 최대 12회 지원	(월 한도액, 단위: 원)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교육지원	초·중·고 수업료 최대 2회 지원 (주거지원 가구의 경우 최대 4회 지원)	(분기별 지원 단가)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최대 6회 지원	(월 한도액, 단위: 원)			
		1인	2인	3인	
		552,000	941,700	1,218,400	
		4인	5인	6인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연료비 지원	10~3월 동절기 연료비를 최대 6회 지원	월 150,000원			
해산·장제비 지원	각 1회 지원	(해산비) 월 70만원			
		(장제비) 월 80만원			
전기요금 지원	1회 지원	월 50만원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2024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2024.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